

2022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

해외취업에 성공한 우리 청년들의 취업초기 현지적응 지원 및 일정기간 경력개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“**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**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27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| 사업 개요

1. 지원내용

- 지원인원 : 4,100명(선진국 2,700명, 신흥국 1,400명)

* 지원인원 달성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- 지원금액

구 분	지원 금액	지원 방식
신흥국 분류국가 (지원금 우대국가)	600만원	(1차) 취업후 1개월 : 300만원 지급 (2차) 취업후 6개월 : 100만원 지급 (3차) 취업후 12개월 : 200만원 지급
선진국 분류국가	400만원	(1차) 취업후 1개월 : 200만원 지급 (2차) 취업후 6개월 : 100만원 지급 (3차) 취업후 12개월 : 100만원 지급

※ 2021년도 사업과 지원금액 동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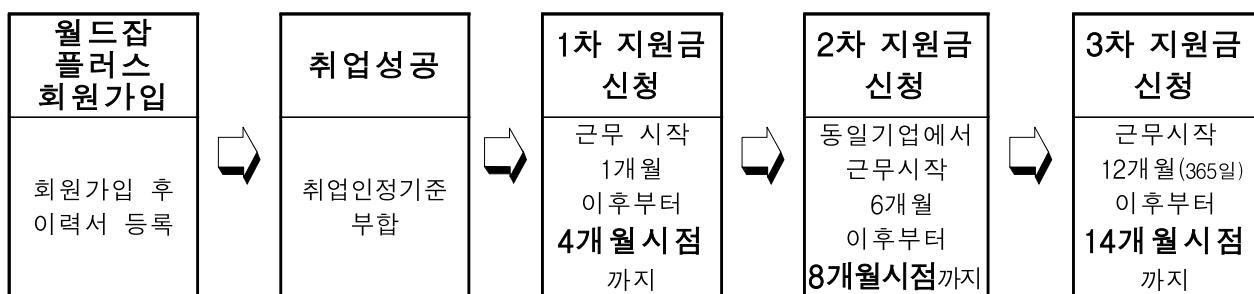
○ 국가구분

- 지원금 우대국가 : 동남아, 중남미, 중동, 유라시아, 아프리카 등 신흥국
※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국가
- 선진국 분류국가 : 25개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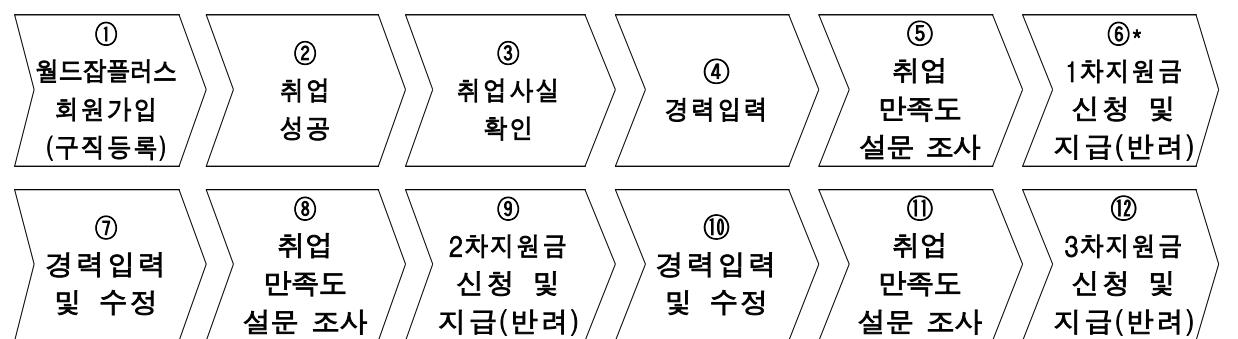
선진국 분류국가

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덴마크, 독일, 룩셈부르크, 미국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레일리아, 오스트리아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일본, 캐나다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홍콩

2. 지원절차 * 세부 지원 절차는 [붙임1] 참조



【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】



* 지원금 신청 전 본인의 구체적인 경력(취업처, 재직기간 및 경력)을 입력
: 이전 취업처에서의 근무기간이나 직종 등

* 1차지원금 신청(⑥)시 모바일 앱 위치정보 필수 연동/ '월드잡플러스' 앱 설치 후 위치정보 동의

※ 지원금 신청 전 현지 발급 서류(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)에 대해 취업사실확인 방법은 3가지임. 온라인으로 취업사실확인 신청, 취업국가 영사관에서 공증, 아포스티유 확인 중 하나 승인 후 제출(2,3차 동일기업 재직 시는 취업사실확인 절차 생략)

II 지원 자격 요건

1. 지원대상 : 아래 ①~④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

- ① 만 34세 이하(87. 1. 1. 이후 출생자)인 자
- ② 신청자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
 - 신청자 중 미혼자의 경우는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(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,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)
 - 신청자 중 기혼자의 경우는 취업일자 전월 신청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의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(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,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)

<기준 금액>

취업일자	건강보험료율	보험료 기준 금액*
'22년 1월까지	6.86%	₩ 329,070
'22년 2월부터	6.99%	₩ 347,570

- * 보험료 기준 금액은 6분위 월 소득 금액에 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, 지역가입자에도 준용
(단,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실 부담비율이 공시된 보험료율의 1/2인 3.495%('21년도는 3.43%)이므로 부과금액의 2배를 합산)
- * 지원금 신청화면의 사전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분위 초과여부 사전확인 가능.
확인 후 지원금 신청화면으로 이동 가능. 본인의 사전모의계산 결과와 서류 검토 결과 건강보험료 조회 값은 다를 수 있음

-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(회원가입) 후 근로계약서*를 작성한 자

*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

- ④ 20·21년도 취업자는 아래 제시된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

1차 지원금	2차 지원금	3차 지원금
'21. 9. 2부터 (선진국/신흥국 동일)	'21. 5. 2부터 (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)	'20. 11. 2.부터 (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)

※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청 기한 확인 후 신청(7p 참조)

2. 취업인정기준

① 취업비자 :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

※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(유사)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,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가 아닌 경우 배제됨

-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은 [붙임2] 참조
- 관광,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
-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*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
* 해외취업알선사업, 해외취업연수사업(K-Move스쿨 등) 등

② 취업직종 : 단순노무직종 제외(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준용)

-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취업 직종 미기재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(직무 기술서)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

제외 직종(단순노무직종)

청소(환경미화)원, 세차원, 주유원, 가정부(가사, 육아도우미), 음식서비스종사자(주방보조, 음식서비스 등), 숙박시설종사자(호텔, 모텔,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)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

③ 임금수준 : 연봉 1,600만원 이상

- 연봉 환율은 '22. 1. 3. 고시환율 적용

※ 2020·21년도 취업자는 해당연도 공고 환율 및 연봉기준 적용

-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, 실 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

④ 근로계약기간 : 1년 이상

-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(호주, 홍콩 등)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

⑤ 취업대상 업체 : 다국적기업, 현지로컬기업, 국내기업 해외법인, 한상 등

*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,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

3. 지원제외 대상 및 환수조치

○ 제외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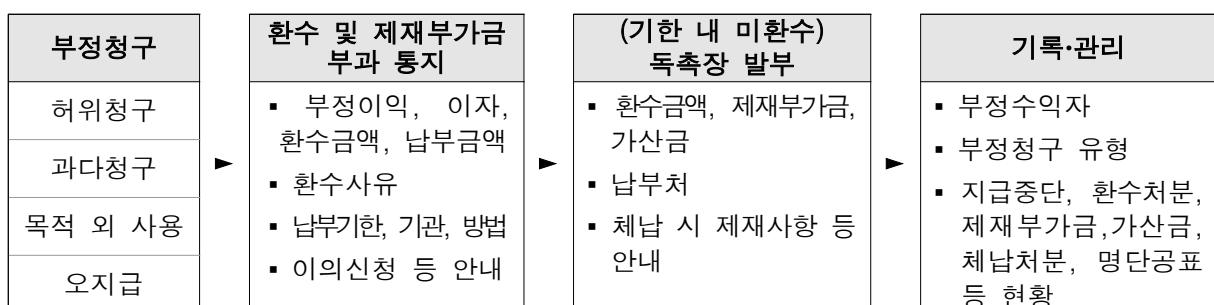
-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위변조한 경우
※ 월드잡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며, 3년간 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업 참여 불가
- 해외취업정착지원금(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)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(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) 또는 동일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
-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
- 『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』에서 지원불가로 판단되는 경우

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위원장 : 국제인력본부장
- 심의위원 : 해외취업 또는 이와 업무 유관성이 있는 공단 직원 및 전문가
- 심의내용 : 지원대상자 결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
- 간사 :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소관 부서장

○ 환수조치

- 상기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른 환수 또는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(이하 공공재정환수법)」에 근거하여 부정이익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, 고액부정청구행위자 명단공표 등 조치
-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등 환수절차



III 사업일정 및 신청 방법

신청기한은 월드잡 시스템에 따르며, 모두 한국 시간 기준임을 유의

1. 사업일정

- 사업기간 : 2022.1.3. 09:00부터 ~ 예산소진 시까지
 - ※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(마감 2주전 월드잡 공지, 개별알림 없음)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
- 지원금지급 : 서류신청일기준 한달에 두 번(1일~15일, 16일~31일)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다음달(익월) 15일, 31일 경 지급
 - ※ 예시 : '22.1.3.~1.15. 신청 → 2.15. 지급, '22.1.16.~1.31. 신청 → 2.28. 지급
 - ※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 지연될 수 있음

2. 신청 방법

- 「월드잡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설치→로그인→마이페이지→정착지원금 신청하기」 이용 (모바일)
- 「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→마이페이지→정착지원금 신청하기」 이용 (PC)
-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(jpg, png, pdf) 각각 업로드 후, 신청하기 클릭.
개인정보동의서 서식의 경우 pdf 신청불가, 첨부파일란이 부족할 경우 기타파일 첨부란에 첨부할 것

3. 신청기한

- ① 1차 지원금 :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
- ② 2차 지원금 :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
 - ※ 단, 1차 승인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
- ③ 3차 지원금 : 근로 개시 12개월(365일)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
 - ※ 단,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하고 2차 승인자가 12개월(365일) 이상 근로한 경우 신청 가능
- ④ 1,2차 지원금 수령 후 이직한 경우 3차 지원금 신청

- (신청기한) 최초 기업 근로 개시 12개월(365일)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이며 이직 준비 기간은 재직기간 불포함. 준비기간으로 인한 신청기한 연장 불가
- (지원 금액) 1,2차 지원금 당시의 최초 취업국가 기준 적용
- (취업인정기준) 1차 지원금 신청기준과 동일
- 1,2차 지원금 수령 당시의 회사에서 근무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력과 이직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12개월(재직증명서 기준)이 되어야 함. ※ 이직 전 회사의 경력증명서, 퇴직증명서도 인정 가능

⑤ 아래 제시된 취업일 해당자는 반드시 본인의 신청기한을 확인 후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※ 본인 신청기한 초과 시 절대 신청 불가

- (1차) '21.9.2~12.31 취업자의 경우 본인의 1차 지원금 신청기한 내 신청가능
- (2차) '21년도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자 중 '21.5.2 취업자부터 본인의 2차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가능
- (3차) '21년도 2차 지원금을 지급받은자 중 '20.11.2 취업자부터 본인의 3차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가능

4. 제출서류

- 제출서류에서 모든 지원 자격 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반드시 확인 가능해야 함
- 서류상 언어가 국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
※ 번역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신청자 본인이 하여도 무관함
- 지원금 신청 전 현지 발급 서류(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)에 대해
 ①영사관 공증 ②취업사실확인 신청 · 승인 ③아포스티유 공증
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완료하여야 함(취업사실확인 관련은 별도 파일 및 월드잡 홈페이지 참조)
 ※ 단계별 절차 생략 여부는 아래 표와 같음

지원금 신청 단계		취업 사실 확인 또는 공증 절차
	1차	필수
	2차	생략
3차	동일기업	생략
	이직(근속6개월 후 이직)	필수

<제출서류>

1차 지원금	(1) 취업비자 (2) 근로계약서 (3) 재직증명서(근속 1개월 이후 발급) (4) 본인통장사본(한국계좌일 것) (5) 가족관계증명서(본인기준 상세본) (6)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(본인)([서식1] 참조) (7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부모/배우자/기타가족용)([서식2] 참조)
2차 지원금	(1) 취업비자 (2) 재직증명서(근속 6개월 이후 발급) (3)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(본인)([서식1] 참조)
3차 지원금 (동일기업 근무자)	(1) 취업비자 (2) 재직증명서(근속 12개월(365일) 이후 발급) (3)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(본인)([서식1] 참조)
3차 지원금 (이직한 경우)	(1) 취업비자 (2) 1·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(근속 6개월 이후 발급) (3)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(4)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(5)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(본인)([서식1] 참조)

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 시 유의사항

1차지원금 신청 시 모바일 앱 위치정보 필수 연동, '월드잡플러스' 앱 설치 후 위치정보 동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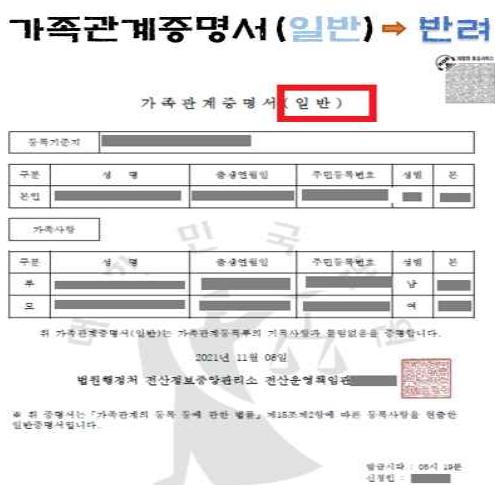
차수	제출 서류	유의 사항
1차 지원금	① 취업 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미국 취업자(J1 비자 포함)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만 인정 가능(2, 3차도 동일) ▶ 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▶ 취업비자 발급이 입사 일자보다 선행할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<p>〈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①영사관 공증 ②취업사실확인 신창승인 ③아포스티유 공증 세 가지 중 한 가지 득한 후 신청〉 ②의 경우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사이트내 메뉴 취업사실확인 온라인 승인 됨을 확인 후 지원금 신청</p>
	② 근로 계약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입한정(입체명, 주소, 전화번호), 근로계약기간, 취업직종, 임금수준, 근로시간, 업무내용, 주요 복리후생사항 등 숙제금, 근로계약체결일 사용자근로자 서명 등 기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당사항 확인할 수 있는 Offer Letter 등도 가능, 사업주 서명 필히 기재 ▶ 미국의 경우 DS-7002(TIPP) 서류도 근로계약서 대체 가능 : 단 취업자, 스폰서 기관, 취업처 서명 모두 기재된 완성본에 한함
	③ 재직 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 일자 및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등 기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작 1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▶ 재직증명서상 근무시작일과 전산상 취업일은 동일해야 함
	④ 통장 사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금 가능한 한국 통장사본 또는 인터넷 통장 표지(계좌개설 확인서) - 제출한 통장 사본과 지원금 신청 시 기입하는 계좌정보가 동일 해야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적금통장, 해외 은행 통장 등 송금 불가능한 통장 제출 불가 ▶ 불가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한 가족 통장 제출 ▶ 인터넷뱅킹 단순 캡쳐 화면 인정 불가
	⑤ 가족 관계 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드시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의미하며, <u>취업 전(前)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 제출(일반본, 영문본 제출시 반려됨)</u>
	⑥ 개인 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 동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으로 본인용 1부와 가족용 1부 모두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가족용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/자녀(기혼 경우)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하며, 만 14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신 정보 기재 가능 ▶ 가족구성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필수 작성(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 작성, 둘다없는 경우 현지신분증 제출) ▶ 부모님의 이혼·사망의 사유로 모두의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 부 또는 모(부양자)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를 추가로 제출 ([붙임3] 참조)]

차수	제출 서류	유의 사항
2차 지원금	① 취업 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미국 취업자(J1 비자 포함)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 필히 제출 ▶ 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▶ 일본 취업자의 경우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류카드 (앞면) 제출(*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불인정) ▶ 중국 취업자의 경우 거류증(工作) 추가 제출
	② 재직 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작 <u>6개월</u>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(6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
	<p>③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제공 동의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에 첨부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용 1부 제출[서식1] 	
3차 지원금 (동일 기업 재직)	① 취업 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미국 취업자(J1 비자 포함)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 필히 제출 ▶ 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▶ 일본 취업자의 경우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류카드 (앞면) 제출(*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불인정) ▶ 중국 취업자의 경우 거류증(工作) 추가 제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·2차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 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갱신된 비자를 추가로 제출 (갱신된 비자 제출 시 기존 비자 사본도 함께 제출) 	
	② 재직 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작 <u>12개월(365일)</u>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(12개월(365일)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
<p>③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제공 동의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에 첨부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용 1부 제출[서식1] 		

차수	제출 서류	유의 사항
	① 취업 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미국 취업자(J1 비자 포함)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 필히 제출 ▶ 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▶ 일본 취업자의 경우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류카드 (앞면) 제출(*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불인정) ▶ 중국 취업자의 경우 거류증(工作) 추가 제출 - 1·2차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 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갱신된 비자를 추가로 제출 (갱신된 비자 제출 시 기존 비자 사본도 함께 제출)
	② 재직 증명서 (이직 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차 지원금 신청 전 재직했던 회사의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(재직 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-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<p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▶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최초 근무시작 6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(6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</p>
3차 지원금 (이직)	③ 근로 계약서 (이직 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직한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서(1년 이상 계약)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, - 기업현황(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 등), 근로계약기간, 취업직종, 임금수준, 근로시간, 업무내용, 주요 복리후생(사회보험, 숙식제공 등), 근로계약 체결일, 사용자근로자 서명 등 기재 <p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▶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Offer Letter 등도 가능하며 사업주 서명 필히 기재</p> <p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▶ 미국의 경우 DS-7002(TIPP) 서류도 근로계약서 대체서류로 가능 : 단 취업자, 스폰서 기관, 취업처 서명 모두 기재된 완성본에 한함</p>
	④ 재직 증명서 (이직 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직한 회사의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- ②와 합산하여 반드시 12개월(365일) 이상의 경력을 증빙 할 수 있어야 함 <p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▶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함</p>
	⑤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제공 동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에 첨부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용 1부 제출[서식1]
	<이직 후 3차 지원금 신청 시에는 이직 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 및 재직 증명서 모두에 대해 1차신청처럼 취업사실 확인을 득하여야 함>	

- (접수순 지급)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는 검토 후 접수순으로 지급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소진 시 즉시 마감함
 ※ 서류마감기한이 남았더라도 예산 소진으로 사업마감시 신청 불가
- (온라인 접수) 지원금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는 월드잡플러스 어플리케이션 또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(www.worldjob.or.kr)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- (신청기한) 신청기한은 개별적으로 안내되고 있지 않으니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‘나의신청기한’ 및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필요
- (소명기한) 출입국 기록 소명 발생 시 신청자의 자급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명해야 하며, 기한 내 소명하지 않을 시 서류 승인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
 ※ 소명기한이 남았더라도 반드시 지원금 사업기간 내 소명, 마감 이후 소명 불가
- (반려유의) 1차지원금 서류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으로 제출

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→ 반려



가족 관계 증명서 (일반)

등록기준자				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
본인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

가족사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부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남
모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여

※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불일치일 경우 판정합니다.

2021년 11월 08일

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과입니다.

* 위 증명서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청탁한 일반증명서입니다.

발급시간 : 08시 12분
신청인 : [REDACTED]
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→ 승인



가족 관계 증명서 (상세)

등록기준자				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
본인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

가족사항

구분	성 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부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남
모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여

※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불일치일 경우 판정합니다.

2021년 11월 08일

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과입니다.

* 위 증명서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청탁한 상세증명서입니다.

발급시간 : 08시 12분
신청인 : [REDACTED]

- (기타 사항) 지원금 신청서(증빙서류 포함)를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취소 및 환수
 ※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시 월드잡플러스 내 연락처(휴대전화번호, 이메일 본인의 현지 연락처 등) 본인의 기재착오 또는 변경된 정보 입력 누락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연락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

불임 1

사업추진절차

【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절차】



불임 2**취업비자 인정기준**

순번	국가	취업비자 인정기준
1	일본	- 취업비자 : 기술·인문지식·국제사무, 기능
2	캐나다	- 취업비자 : Work Permit, 한-캐FTA - 인턴비자 : Post-graduation Work Permit
3	호주	- 취업비자 : 482고용비자, 407비자 등
4	싱가포르	- 취업비자 : EP(전문인력비자), S pass, WP(work permit)
5	중국	- 취업비자 : Z비자, (홍콩 : EMPLOYMENT비자), 거류증(工作)
6	미국	- 취업비자 : H-1B, H-1C, H-2B 등 - 인턴비자 : OPT(F1비자 같이 제출), J-1
7	뉴질랜드	- 취업비자 : Work Visa
8	필리핀	- 취업비자 : 9G비자, 47(a)(2)비자, AEP, Clark Visa
9	인도네시아	- 취업비자 : Stay Permit Index가 표시되어 있는 ITAS/KITAS
10	베트남	- 취업비자 : LD (거주증 앞뒷면 모두 제출)
11	말레이시아	- 취업비자 : Employment Pass
12	아랍에미리트	- 취업비자 : Residence Visa
13	독일	- 취업비자 : Residence For Employment, EU Blue Card

* 상기 국가 외 취업국가는 1년 이상의 근로가 가능한 해당국 취업비자 인정

불임 3**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**

- 신청자 본인이 기혼일 경우 신청자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(취업 전월 이후 발급)만 제출
- 신청자 본인이 미혼이며 부모 모두 생존할 경우 신청자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(취업 전월 이후 발급)만 제출
- 단, 신청자가 미혼이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/재외국민/외국인/이혼일 경우 아래 표에 안내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

<추가 제출서류>

구분	부	모	제출서류(상세본)	추가서류	비고
신청자 미혼	생존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부)	-	
	생존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부)	-	
	생존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	이혼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-	
	이혼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	-	
	이혼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	-	
	이혼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	사망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-	
	사망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	-	
	사망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본인)	-	
	사망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	재외국민·외국인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	재외국민·외국인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	재외국민·외국인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	재외국민·외국인	재외국민·외국인	-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
* 부모·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신청자 본인이 인터넷 발급 가능(정부24, 대법원)

** 발급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 제출 가능

[서식 1] ※ 모든 항목 작성 및 서명 필요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**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 선정·심사(출입국 기록,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 및 보험료 납부액 조회,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)

-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·이용 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
필수 항목	(본인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이메일, 전화번호, 계좌정보	동의일로부터 20년

2.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신청 및 해외취업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한국산업인력공단, 고용노동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외교부, 건강보험공단, 한국고용정보원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·제공 목적 : 해외취업 지원금 지원 대상(구직등록 정보, 건강보험정보, 출입국사실확인, 유사사업 지원금 수혜여부) 및 참여자의 사후 관리 지원 및 해외취업 효과분석, 정책방향 수립
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취업국가, 취업처, 직종, 이직/퇴직여부, 임금, 국내복귀·취업여부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 : 취업일로부터 2년간

*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

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※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사유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해외근무 사실 · 소득분위 · 중복수혜 확인	주민등록번호	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 2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2

※ 귀하는 상기 1~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참여자 선정 제한,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성명	주민등록번호	1. 수집·이용	2. 3자 제공	서명
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
2022.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[서식 2]

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(가족용)

본인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 의 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인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관할 기관에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- 수집 정보 : 성명, 신청자와의 관계, 연락처(휴대전화번호)
- 조회 정보 : 해당자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
- 조회 목적 : 소득분위 확인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조회
- 정보 보유기간 : 준영구

성 명	신청자와의 관계 (부/모/배우자 등)	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	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서 명
			동의(), 미동의()	
			동의(), 미동의()	
			동의(), 미동의()	
			동의(), 미동의()	
			동의(), 미동의()	
			동의(), 미동의()	
			동의(), 미동의()	
			동의(), 미동의()	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의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<기타 고지사항>

※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사유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건강보험자격 및 보험료 납부액 조회를 통한 소득분위확인	주민등록번호	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및 고용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

2022. . .